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09 - 19호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인천시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심의 기능을 담당할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의 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사업의 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

라. 군수·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시의회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032-440-6213,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협의·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군수·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